

불항소합의서

사 건 20ㅇㅇ가합ㅇㅇㅇ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(원고, 피고)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.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| | 항소(抗訴)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🖁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항소(抗訴)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🗣 |
| 관 련 | 있음. 다만,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(上告)할 권리 |
| 조 문 |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|
| | 니함(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). |
| | •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 |
| | 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|
| | 제1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 |
| | 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 합의를 |
| |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음. 불항소의 합의는 심 |
| | 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 ·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하 |
| 기타 | 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|
| |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 |
| | 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(대법원 |
| | 1987. 6. 23. 선고 86다카2728 판결). |
| | ·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 |
| | 원의 직권조사사항임(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다2066 판 |
| | 결). |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